#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9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5.

발 의 자: 김소희 · 김위상 · 김성원

이인선 • 서지영 • 최은석

김대식 • 우재준 • 김예지

김상훈 · 김형동 · 조지연

김선교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현재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생물종, 서식지 등의 생태계-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산재된 생태계-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.

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·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

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이하 "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 보관리시스템"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・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의3(생태계 표준관측망 구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계 기후대응표준관측망(이하 "생태계 표준관측망"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11조의 2에 따른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

다.

③ 제1항에 따른 관측망의 구축・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1조의2(생태계 기후대응 통합
	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	등)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
	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
	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하
	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이하
	"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
	리시스템")을 구축·운영할 수
	<u>있다.</u>
	②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
	의 장에게 생태계 기후대응 통
	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
	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
	<u>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</u>
	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
	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
	<u>한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
	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11조의3(생태계 표준관측망 구
	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기
	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

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 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(이 하 "생태계 표준관측망")을 구 축・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11조의2에 따른 생태계 기후 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연 계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관측망의 구 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